

□ 종합재산신탁제도, 금융 불균형 심화시킨다

1. 종합재산신탁 제도의 내용과 도입 배경

○ (내용) 정부는 신탁업 관련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위축된 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종합재산신탁 제도를 도입함

- 2004년 12월 29일의 「신탁업법」 개정으로 2005년 4월 18일부터 종합신탁제도가 시행됨

- 종합재산신탁제도는 단일 계약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無體재산권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하여 통합관리·운용할 수 있는 신탁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됨
- 미국은 개인 신탁이 기본적으로 종합재산신탁 체제로 발전해 왔으며, 일본은 1982년 ‘포괄신탁’이라는 종합신탁제도를 도입¹⁾
- 이번 「신탁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재산신탁의 도입 뿐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 등 無體재산권을 수탁 가능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과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 현재의 개별 신탁체제로는 고객에 대한 종합적 재산관리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탁업무를 단일 계약화 하여 고객 편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금번 신탁업법 개정의 주요 취지임

- 현행 은행 신탁업법은 금전, 유가증권, 동산, 토지 등 신탁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단일 신탁계약에 의한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수탁하는 것은 불가능

○ (도입 배경) 2004년 4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 시행 이후 신탁업 위축이 가속화된 것도 종합재산신탁 제도 도입의 주요 계기임

- 국내은행의 신탁상품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전신탁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리 경쟁, 확정금리상품의 비중 과다,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크게 위축됨

1) 미국의 신탁은 크게 기업 신탁, 개인 신탁, 연금형 신탁의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종합적인 관리가 수행됨

- 금융권역별로 적용되던 간접자산관련법을 기능별로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으로 은행신탁의 취급상품 범위와 영역은 더욱 축소됨
 -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자산운용사로 규정됨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에 한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적용받게 됨. 이에 따라 그동안 「신탁법」에 의하여 원본미보전실적배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2004년부터 금지됨
 - ※은행신탁의 불특정금전신탁 중 퇴직 및 연금신탁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에 해당

< 국내 은행 금전 신탁 구성 추이 >

(말잔 : 조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9
불특정금전	131.2	108.5	60.3	58.8	40.0	30.7	27.4
확정배당	38.9	19.6	0.8	-	-	-	-
실적배당	92.3	88.9	59.5	58.8	58.8	40.0	26.6
(원본보전) ¹⁾	(6.8)	(6.9)	(10.0)	(20.0)	(20.0)	(14.9)	(14.8)
(원본미보전) ²⁾	(85.5)	(82.0)	(49.4)	(38.7)	(38.7)	(25.1)	(11.8)
특정금전	26.9	11.4	17.5	22.5	33.7	27.4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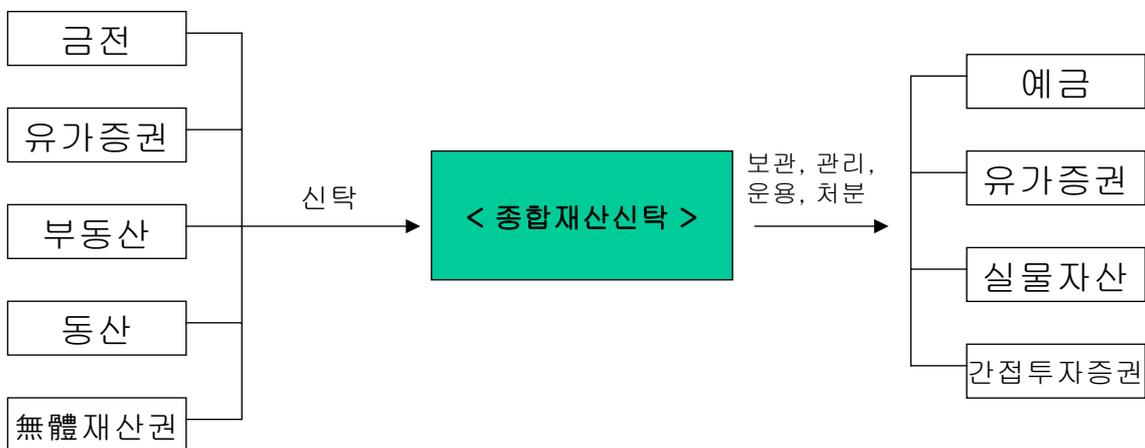
주 : 1)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 등
 2) 가계 및 기업금전, 가계장기, 근로자 우대, 신종적립 등
 자료 : 한국은행

2. 기대 효과

- (은행측면) 금번 도입되는 종합재산신탁 제도 도입으로 신탁 고유기능 회복 등이 기대되고, 다양한 비즈니스의 연계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 종합재산신탁은 장기적으로 은행신탁의 주력상품으로 부상하면서 '수탁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신탁 기능의 회복을 기대함
 - 그러나 재산노출을 꺼리고 세제가 투명하지 못한 사회여건상 단기적으로 급속한 수탁고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일본의 경우 재산신탁 허용, 재산신탁은행 설립 등으로 신탁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되면서 포괄신탁 수탁고가 급증 (투자신탁을 포함한 총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중 : 1999년말 1.5% → 2003년 9월말 40.9%)

- 업무의 성격상 복잡한 법률, 세무 등의 서비스가 수반되므로 은행신탁 본질에 잘 부합될 뿐만 아니라 Private Banking 등과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 현재 Private Banking을 통해 종합 재산관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나 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이 개별신탁을 이용하여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곤란
 - 종합재산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 지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정 금전신탁과 유사하나 수탁재산의 범위가 금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가증권, 부동산 등 모든 재산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특정금전신탁과 차이
 - 단일 신탁계약으로 모든 은행고객의 재산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금융기관의 전문가에 의한 안정적인 재산관리가 가능
 - 증권사 Wrap Account의 경우 주로 금전을 위탁받아 유가증권에 운용하나, 종합재산신탁은 수탁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운용대상도 유가증권 외에 부동산 등으로 확대 가능하여 운용방식이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우위를 지닐 수 있음

< 종합재산신탁제도 >



- (고객측면) 은행고객에게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또한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 금융상품 구축이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됨
- 개인, 기업 등의 은행고객은 보다 편리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프라이빗뱅킹과 연계하여 부유층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재산관리와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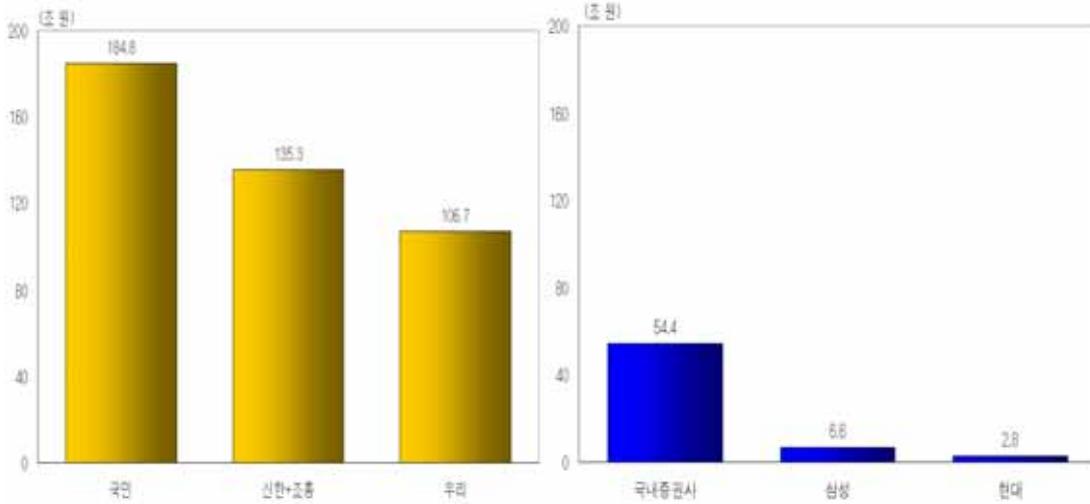
- 기업고객에게는 금전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보유자산을 하나의 신탁 계약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수수료 등 비용절감과 안전성의 확보도 가능
- (고령화 대비 수단 확대) 생전에는 재산을 보전 및 증식하며, 사후에는 유산관련 업무까지 포괄하는 전 생애에 걸친 금융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사회 안전망 역할 가능
 - 개인소유의 모든 재산을 신탁하고 신탁의 수익권을 통해 정기적인 금전을 수령하는 신탁계약을 통해 고령화시대의 금융상품 구축이 용이
 -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등을 통한 노후생활 확보수단으로 활용²⁾
 -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3. 금융 산업의 불균형 문제와 과제

- (금융 산업의 불균형) 앞으로 선진국 종합재산신탁 제도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은행의 신탁업 겸영체제에서 종합재산신탁 제도의 도입은 자칫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불균형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 산업은 은행권 위주로의 불균형이 심화됨
 -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은행권은 급속히 비대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증권, 자산운용업계, 보험 등 제 2금융권의 영업은 위축되었음 → 자산운용업, 투자은행업 위주의 동북아금융허브 구상과는 배치
 - 현재는 국내 증권사 자산 규모를 모두 합쳐도 은행업계 3위권(농협 제외)인 우리금융지주회사 자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함
 - 은행위주의 금융구조조정이 은행과 제2금융권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됨

2) 현대경제연구원 주평 2004년 5월 24일자 '노후소득보장 문제와 역모기지 제도' 참조

< 국내 주요 은행 및 증권사의 자산 규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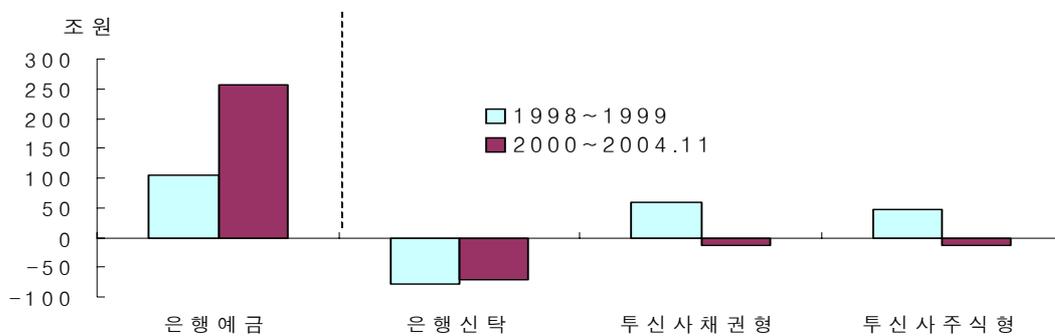


주 : 2004년 9월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은행권이 독점하고 있는 신탁업의 제도 강화는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입 현상이 강화되어 금융 산업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음

- 보수적 성향이 짙은 국내 부유층 행태를 고려할 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은행예금뿐 아니라 은행신탁으로의 자금유입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뱅킹 서비스를 신탁이라는 제도적인 틀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향유(높은 수수료 수입 기대)
- 반면,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자산운용사의 펀드, 보험회사의 부유층 대상 PB업무 등의 입지가 축소될 전망

< 외환위기 이후 시중자금 증감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자산운용협회

- (과제) 선진화된 신탁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금융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중요함
 - (제도 측면) 선진국 종합재산신탁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신탁 대상물에 대한 '열거주의'를 '네거티브 제도'로 변경하여 신탁대상을 확대
 - 현재 독립적 운용만 가능한 재산신탁의 금전에 대한 집합적운용(CIF: Collective Investment Fund)을 허용하여 신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금융산업 균형 발전 측면) 금융 산업의 균형발전과 신탁업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증권(투자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게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재경부는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은행에 이어 증권회사에서도 신탁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
 - 각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린 신탁업이 운용된다면 보수적인 성향, 시장지향적인 성향 등으로 고객분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융 산업내 경쟁체제가 구축 → 장기적으로 신탁업의 발전을 유도
 - (금융기관 영업 측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선진형 재산관리형 신탁 상품을 개발·확대할 필요
 - 개인의 일생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저축, 교육대출, 주택대출, 노후대비, 유산처리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2006년 예정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업연금관련 상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박덕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